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찬성자 : 48명)

나. 의안번호 : 제 1034 호

다. 발의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 2. 제안이유

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1만 $m^2$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정함. (안 제9조제2항)

나.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1조~제32조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sup>1)</sup>(이하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약어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 책무)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u>시의</u>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생 략)	제3조(기본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u>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생 략) ② <u>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u>
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u> 1. <u>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u>	<삭 제> <삭 제>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 략)

현행	개정안
<p>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 개발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p> <p>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4. 빗물분담량 산출</p> <p>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p> <p>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p> <p>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p> <p>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p> <p>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p> <p>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p> <p>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p> <p>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p> <p>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재난안전관리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을 포함한다.</p> <p>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처리에서 제척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25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u></p> <p><u>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p> <p><u>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p> <p><u>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u></p> <p><u>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전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u></p> <p><u>1. 회의 일시 및 장소</u></p> <p><u>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u></p> <p><u>3. 회의 안전과 처리내용 등</u></p> <p><u>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u>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p> <p>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p> <p>3. 지하수 분과위원회</p> <p>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2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p>&lt;삭 제&gt;</p>
<p>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3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lt;삭 제&gt;</p>
<p>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3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 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p>제2조(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2항 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조 제목 중 “심의·자문”을 “자문”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 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 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p>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가. 물순환 시민위원회 폐지 등

(안 제9조제2항, 안 제21조~제32조 삭제, 안 부칙 제1조~제3조)

- 먼저,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물순환조례”）」 제21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14.2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물순

환조례로 전부개정<sup>2)</sup>되면서 동년 4월부터 설치·운영되었으나, 현행 물순환조례 제32조<sup>3)</sup>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난 시점('16.4월)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없이 '20년까지 위원회를 구성·운영<sup>4)</sup>해 왔으며,

- 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명목상 위원회 운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현행 물순환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그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가 이처럼 존속기한 연장 없이 명목상 위원회로 구성·운영해 온 배경에는 위원회가 물순환 회복 정책 등에 대한 법적 심의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안 사항에 대한 단순 자문으로 국한되어 운영되어 오다 보니 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짐.

○ 또한, 현재 서울시는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3566, '23.3.31.)'에 따라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은 지금의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9조제2항은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행 기본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sup>5)</sup>

2) [시행 2014. 2. 9.] [서울특별시조례 제5617호, 2014. 1. 9., 전부개정]

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 1기 '14.4.~'16.3., 2기 '16.4.~'18.3., 3기 '18.12~'20.12., 현재 물순환 시민위원회 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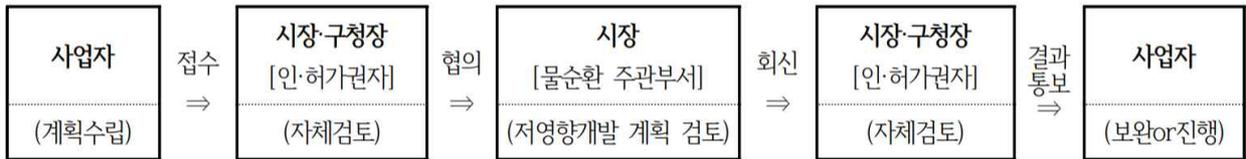
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표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대상
    - ▶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광장, 녹지, 공공청사, 공원, 운동장,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학교, 하수도, 도로, 보도, 건축물 등)
    - ▶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



○ 지금까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연평균 37회(표 3) 참조) 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자문을 규정한 현행 제9조제2항이 신설<sup>6)</sup>된 '18.1.4.일 이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자문은 현행 명목상 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오고 있는 상황임.

[표 3]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실적	186	26	54	48	32	26	'23.8.1.기준

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 ② (생략)

6)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83호, 2018. 1. 4., 일부개정]

- 따라서, 안 제9조제2항의 개정이 이 같은 편법 운영을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정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자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위해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안 부칙 중 제3조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7)에서도 물의 재이용 정책에 관해 현행 기본조례 제21조8)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순환조례의 위원회 폐지가 시행될 경우를 고려하여 부칙으로 이를 동시에 개정토록 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의 심의·자문 중 심의기능은 그동안 시행된 사례가 없고, 또한, 같은 조 각 호의 현행 심의·자문 대상들을 살펴볼 때 심의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바, 개정안과 같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7)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따른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8)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 나. 기타 용어정비 등(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4]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u>시의</u>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생략)	제3조(기본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u> ----- ④ (현행과 같음)